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우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2. 11. 18.

발의의원 : 박우근, 박소영,
박종필,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허시영, 황순자
의원(10명)

1. 제안 이유

학교폭력을 조기에 예방하고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과의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시장의 책무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에 경찰과의 협의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6조)
- 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자료 요청 및 협조를 규정함(안 제7조)
- 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찰 등 관련기관, 단체에 사업비의 지원을 규정함(안 13조)

3. 참고 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 붙임
-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교육감과”를 “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이하“경찰청장”이라 한다)과”로 하며, 제4항은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교육감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경찰,”로 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시장은”을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찰 등 관련기관, 단체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u>대구광역시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략) ④ <u>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u>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u>교육감과 협의하여</u>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6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u>교육감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경찰,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u>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② (생략)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3조(사업비의 지원) <u>시장은</u>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u>시장은</u>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찰 등 관련기관, 단체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관 계 법 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